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-12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여성의 생리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하여, 가임기 여성의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월 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13조의3(할인) 제11호

-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.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한다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8. 10. 18. ~ 2018. 11. 7. (의견제출 없음)

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권고사항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8. 11. 15.)
- 5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- 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.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에 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의3(할인) ① 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,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의3(할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.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문화진흥과 김지영
연 락 처	02-3153-8355